

제30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
제2차 정례회 도시·교통위원회
【2023. 11. 16.(목) 14:00】

2024년도 도시관리국 소관
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
검 토 보 고 서



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
도 시 · 교 통 위 원 회

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 (도시관리국)

검 토 보 고

2023년 11월 16일

전문위원 배 금 택

1. 도시관리국 소관 기금 조성 규모(연도말 예치금 기준)

(단위: 천원)

기 금 명	2023년도말 조성액 [㉠]	2024년도 기금운용계획			2024년도말 조성액 [㉡] = [㉢] + [㉠]	증감률
		수입액 [㉢]	지출액 [㉣]	증감액 [㉤] = [㉢] - [㉣]		
옥외광고발전기금	1,757,922	260,190	653,125	△392,935	1,364,987	△22.35%

- 도시관리국 소관 기금은 도시디자인과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2024년도 말 조성 규모는 총 13억 6,498만 7천원으로, 전년도 대비 3억 9,293만 5천원 (△22.35%)이 감소하였음.

2. 옥외광고발전기금

- 본 기금 재원은 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수수료, 과태료, 이행강제금 등으로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에 근거하여 설치·운영하고 있음.

가. 기금운용(수입·지출)계획

(단위: 천원)

기금명	수입		지출	
	항목	금액	항목	금액
	합계	2,018,112	합계	2,018,112
옥외광고발전기금	· 예치금회수 · 이자수입 · 기타수입	1,757,922 61,076 199,114	· 비용자성사업비 · 예치금	653,125 1,364,987

- 수입과 지출은 20억 1,811만 2천원으로,
 - 수입은 예치금회수 17억 5,792만 2천원, 이자수입 6,107만 6천원, 기타수입 1억 9,911만 4천원을 계상함.
 - 지출은 비용자성사업비(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간판개선사업,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및 지원 사업, 불법 광고물 정비사업) 6억 5,312만 5천원, 예치금 13억 6,498만 7천원이 편성되었음.

3. 검토 의견

- 본 계획안은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구의회 의 심의·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,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59조에 따라 기금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하여 예산과는 별도로 설치 운용하며 법령 및 조례에 근거를 두고 기금을 조성·운용하고 있음.
- 2024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주요 지출계획을 살펴보면,
 -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간판개선사업에 1억 141만 6천원 증액 편성 (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간판개선사업 1억원 증액 등)
 - 불법 광고물 정비사업에 1억 3,18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음. (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8,388만원 감액,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도로 도포 4,400만원 감액 등)
- 연도별 기금 조성액이 매년 줄어드는 반면 집행액¹⁾은 이를 초과하여 사용되고 있으므로, 사업의 효과성을 검토하여, 건전한 기금운용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.

1)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

(단위: 천원)

연도별	조 성 액								집 행 액							잔액 (㉔-㉓)
	계 ㉔	전입금	보조금	차입금	특별회계수 (여과포함)	예수금	이자수입	기타수입	계 ㉓	비용자정사업비	융자성사업비	민력운영비 및 기본경비	차입금상환	예수금상환	기타지출	
2018년 까지	5,355,178	0	0	0	0	0	209,838	5,145,340	1,986,049	1,914,709	0	71,340	0	0	0	3,369,129
2019년도	692,663	0	0	0	0	0	75,447	617,216	414,483	414,483	0	0	0	0	0	278,180
2020년도	552,538	0	0	0	0	0	65,748	486,790	1,207,023	1,207,023	0	0	0	0	0	△654,485
2021년도	423,830	0	20,000	0	0	0	41,473	362,357	848,161	848,161	0	0	0	0	0	△424,331
2022년도	373,363	0	24,682	0	0	0	50,522	298,159	777,980	775,894	0	0	0	0	2,086	△404,617
2023년도	276,850	0	0	0	0	0	36,899	239,951	682,804	681,779	0	0	0	0	1,025	△405,954
2024년도	260,190	0	0	0	0	0	61,076	199,114	653,125	653,125	0	0	0	0	0	△392,935
계	7,934,612	0	44,682	0	0	0	541,003	7,348,927	6,569,625	6,495,174	0	71,340	0	0	3,111	1,364,987

□ **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**

제8조(기금운용계획 및 결산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,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·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견을 받아야 한다.

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, 새로운 비목(費目)을 설치할 수 없다.

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9조(기금운용계획안의 내용) ① 기금운용계획안은 운용총칙과 자금운용계획으로 구성된다.

② 운용총칙에는 기금의 설치목적, 기금의 조성·운용 및 자산 취득에 관한 총괄적 사항을 규정한다.

③ 자금운용계획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으로 구분하되, 수입계획은 그 내용의 성질과 기능을 고려하여 장(章)·관(款)·항(項)으로 구분하고, 지출계획은 그 내용의 기능별·사업별 또는 성질별로 주요항목 및 세부항목으로 구분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주요항목은 분야·부문·정책사업으로 구분하고, 세부항목은 단위사업·세부사업·목으로 구분한다.

□ **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**

제6조의2(옥외광고발전기금의 설치) ① 시·도지사 및 시장등은 광고물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을 설치·운영한다. <개정 2016. 1. 6.>

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마련한다. <개정 2016. 1. 6.>

1.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시·도(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 또는 시·군·자치구에 배분되는 수익금
2. 제17조에 따른 수수료
3. 제20조에 따른 과태료
4.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
5.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

6. 국가 또는 시·도로부터의 보조금

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. <개정 2016. 1. 6.>

1. 옥외광고산업의 진흥
2. 광고물등의 정비·개선
3. 옥외광고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
4. 광고물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하여 시·도 또는 시·군·자치구 조례로 용도를 정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

④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·도 또는 시·군·자치구 조례로 정한다. <개정 2016. 1. 6.>

□ 서울특별시 강서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6조의2에 따라 설치되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옥외광고발전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(개정 2019.3.20., 2019.5.10.)

제2조(기금의 재원) 서울특별시 강서구 옥외광고발전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 (개정 2019.3.20, 2019.5.10.)

1. 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서울특별시 강서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로 배분되는 수익금 (개정 2019.5.10.)
2.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
3.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
4.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
5.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
6.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로부터의 보조금
7. 삭제 (2019.5.10.)

제3조(기금의 용도)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 목적에 사용한다.

1.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(개정 2019.3.20.)
2. 광고물등의 정비·개선 (개정 2019.3.20.)
3. 옥외광고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(개정 2019.3.20.)
4. 광고물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(신설 2019.3.20, 개정 2019.5.10.)
5.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(개정 2019.5.10.)
6.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기준에 관한 개발사업 (개정 2019.5.10.)
7.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규칙으로 정한다. (개

정 2019.3.20, 2019.5.10.)

② 기금은 제1항에서 규정한 사업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. (개정 2019.3.20.)

제4조(기금의 운영관리)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수입·세출예산 외 현금
계좌로 관리한다.(개정 2019.5.10.)

② 기금은 구 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·관리 한다.

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,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
다.

제9조(기금운용 계획)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
다.

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 (개정
2019.3.20.)

1.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

2.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(개정 2019.3.20.)

3. 기금계산에 관한 사항

4.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(개정 2019.3.20.)

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구의회에
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. (개정 2019.3.20, 2019.5.10.)